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. 4. 29 선고 2015가단1476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7. 2. 7 선고 2016나60164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. 4. 29 선고 2015가단14766 판결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 2016. 2. 19.

판결 선고 2016. 4. 2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B는 3/14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는 각 2/14 지분에 관하여,

나. 별지 목록 제2, 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, 피고 B는 3/7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는 각 2/70 지분에 관하여,

다.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B는 36/64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는 각 24/641 지분에 관하여

각 1986. 6. 1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, C,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, C, D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B에게 3/14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에게 각 2/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6. 8. 26. 접수 제16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 목록 제2, 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에게 3/7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에게 각 2/7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. 8. 26. 접수 제16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에게 36/64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에게 각 24/64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. 8. 26. 접수 제16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, C,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1) 피고 B,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2) 피고 D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2.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기초사실

1) 분할 전 경기도 안성군 F(이하 'F'라고만 한다) G 전 1,749m²(이하 '분할 전 G 토지'라 한다) 및 분할 전 H 잡종지 641m²(이하 '분할 전 H 토지'라 한다) 중 168/641 지분에 관하여 각 1986. 8. 26. '1986. 8. 19. 매매'를 원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분할 전 J 대 2,185m²(이하 '분할 전 J 토지'라 한다)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661m² 및 창고 330m²(이하 '분할 전 J 토지 지상 각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각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I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/5 지분, 피고 E 명의로 3/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위 각 분할 전 토지와 건물 및 지분을 '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및 지분'이라 한다).

2) 이후 행정구역변경 및 분할과정을 거쳐 분할 전 G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안성시 K(이하 'K'이라고만 한다) L 전 472m²로, 분할 전 H 토지는 M 잡종지 275m² 및 N 잡종지 308m²,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, 분할 전 J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O대 324m²로 각 분할되었고, 분할 전 J 토지 지상 각 건물은 별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건물로 되었다.

3) 원고와 피고 E은 형제지간이다.

[인정근거]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원고의 주장 요지

1) 원고와 피고 E은 1986. 6. 13.경 아버지 P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및 피고 E이 일부 마련한 금원으로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및 지분을 대금 합계 192,292,000원에 각 1/2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는데, 세금 문제 등으로 피고 E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(이하 '이 사건 명의신탁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분할 전 G 토지 및 분할 전 H 토지 중 168/641 지분에 관하여는 각 피고 E 단독 명의로, 분할 전 J 토지 및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원고 명의 2/5, 피고 E 명의 3/5의 지분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(이하 위

각 소유권이전등기를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

2) 따라서,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E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,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, C, D를 대위하여 피고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E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다. 판단

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,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및 지분을 매수할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 E은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, 매매대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 또한 피고 E이 보관하고 있는 점, 원고는 30여 년 동안 피고 E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, 분할 전 J 토지 및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2/5 지분, 피고 E 명의로 3/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지분 비율 및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이유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, 갑 제8 내지 21, 26, 27,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라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삼윤

별지